

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(2021. 12. 17.)  
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규칙 일부  
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2월 29일

목포시의회의장 박 창 수 

목포시의회 규칙 제6호

### 목포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목포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 
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목포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운영  
규정」”을 “「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」”으로 한  
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원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「<u>목포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4조(지원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「<u>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</u>」 ----- -----.</p>